

부천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2. 18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)

□ 제안이유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고 개
선하는 한편,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
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
5년마다 그 타당성을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2조)

나.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, 경관계획의 내용, 경관계획 수립

을 위한 공청회,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)

다.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)

- 구성: 위원장 1명과 지역주민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
- 위원의 임기: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

라.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내용, 운영회의 설립신고, 승계자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,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)

마.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천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)

- 구성: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
- 위촉위원의 임기: 2년으로 하되, 연임가능

바.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22조)

사.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 및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상가에게 전기료 등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은 있는지?	○설계비 및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경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「경관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.

제3조(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) 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안계획서(제안의 개요,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,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,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,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)
2. 경관현황 종합분석도
3. 경관기본구상도
4. 경관계획도
5.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
6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
2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
3.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 여부
4.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

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경관계획의 내용) 영 제3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2.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3.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4.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5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)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,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

알려야 한다.

②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및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, 시정뉴스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⑤ 공청회의 주재자,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경관사업의 대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2.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영 제8조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비 산출근거
2. 사업비 조달방안

3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

4. 사업계획 관련도서

5. 사업의 기대효과 등

제8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경관사업 지구 내 주민,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

2.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

3. 경관사업 시행자

4.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

5.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서기 1명을 두되,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이 된다.

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

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9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(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
2.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관사업에 대한 평가)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,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) 영 제9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
2.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2조(경관협정의 내용)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담장 정비에 관한 사항
2. 도로변 축대 설치 및 개·보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

② 경관협정서에는 법 제16조제5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
2. 경관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3. 경관협정 관련 도서
4. 경관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
제13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영 제11조제5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
2.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4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(이하 “협정체결자”라 한다)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
2. 협정체결자의 동의서

3.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

4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

제15조(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)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
2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3. 사업내역서 및 사업비의 산출근거
4. 사업비 조달방안(공공, 민간의 재원 구분)
5. 시방서 및 설계도면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6.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
7. 유지관리 계획

제16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

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천시경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의회 의원

2.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

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환경·농림·디자인 등 경관계획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8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의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1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심의 대상)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부천시건축위원회와 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5조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(야간경관을 포함한다)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
3.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
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21조(위원회의 자문 대상)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

2. 도로 폭 30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자문. 다만,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.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

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2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③ 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받은 안건(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3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이다.

제24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

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) ①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
2.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지정한 문화재
3. 교량·터널·육교 등 교통시설물
4.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1.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제4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제27조(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등) 시장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예술성을 고려한 미적 경관요소로써 공사장 가림막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·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공공건축물(제20조 관련)

분 류	대 상 건 축 물	비 고
공공건축물	<p>가.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동 주민센터)</p> <p>나. 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주택 등 포함)</p> <p>다. 시·구에서 건축하는 (허가)협의 대상 건축물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)</p> <p>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허가)협의 대상 건축물(파출소, 소방서, 우체국 등)</p> <p>마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 등)</p> <p>바. 공공 화장시설(화장장, 납골당 등)</p> <p>사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</p>	

[별표 2]

도시시설물(제20조 관련)

1. 도시구조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
도로시설물	가. 교량(철교를 포함한다) 나. 고가차도(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) 다. 입체교각, 지하도의 지상부, 광장 라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보도	
도로부속 시설물	가. 보도육교 나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방음벽, 중앙분리대, 횡스, 블라드 등	

2. 가로시설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
도로부속 시설물	가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20주 이상의 가로등(배전함 포함) 및 각종 전주 나. 도로명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
문화관광시설	가. 관광안내소, 관광안내도, 안내표지판	
환경관리시설	가. 공중화장실, 휴지통 나. 대기오염 전광판	
교통관련시설	가. 보행자안내표지 나. 택시·버스 승차대 다. 정류소·택시 표지판 라. 자전거 보관대 마.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. 공용주차장 관리소 사.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	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시철도시설	가. 지하철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) 나. 지하철안내표지판 다. 환기구(흡·배기구) 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	
도로점용 대상 시설물	가. 분전함·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-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변압탑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우체통, 소화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. 사설안내표지·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. 가로판매대·구두수선대·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(노점, 자동판매기, 상품진열대) 라. 현수막 게시대, 지정벽보판(광고판), 전광판, 고정형 행정광고물, 게시판, 포스터, 통합사인, 배너기, 생활정보지함 혹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각매체의 디자인(일시적인 것은 제외) 마.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, 점포, 창고, 자동차주차장, 광장, 공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

부천시 경관 조례안

의안번호	제527호
의결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,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2조)
- 나.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, 경관계획의 내용,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,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규정함.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)
- 다.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)
 - 구성: 위원장 1명과 지역주민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

- 위원의 임기: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
- 라.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내용, 운영회의 설립신고, 승계자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,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)
- 마.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천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)
- 구성: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
 - 위촉위원의 임기: 2년으로 하되, 연임가능
- 바.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22조)
- 사.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 및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)

부천시 경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「경관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.

제3조(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) 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안계획서(제안의 개요,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,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,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,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)
2. 경관현황 종합분석도
3. 경관기본구상도
4. 경관계획도
5.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
6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
2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
3.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 여부
4.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

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경관계획의 내용) 영 제3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2.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3.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4.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5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)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,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

알려야 한다.

②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및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, 시정뉴스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⑤ 공청회의 주재자,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경관사업의 대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2.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영 제8조제7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비 산출근거
2. 사업비 조달방안

3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

4. 사업계획 관련도서

5. 사업의 기대효과 등

제8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경관사업 지구 내 주민,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

2.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

3. 경관사업 시행자

4.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

5.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서기 1명을 두되,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이 된다.

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

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9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(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
2.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관사업에 대한 평가)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,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) 영 제9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
2.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2조(경관협정의 내용)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담장 정비에 관한 사항
2. 도로변 축대 설치 및 개·보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

② 경관협정서에는 법 제16조제5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
2. 경관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3. 경관협정 관련 도서
4. 경관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
제13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영 제11조제5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
2.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4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(이하 “협정체결자”라 한다)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
2. 협정체결자의 동의서

3.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

4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

제15조(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)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
2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3. 사업내역서 및 사업비의 산출근거
4. 사업비 조달방안(공공, 민간의 재원 구분)
5. 시방서 및 설계도면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6.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
7. 유지관리 계획

제16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

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천시경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의회 의원

2.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

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환경·농림·디자인 등 경관계획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8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의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1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심의 대상)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부천시건축위원회와 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5조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(야간경관을 포함한다)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
3.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
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21조(위원회의 자문 대상)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

2. 도로 폭 30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자문. 다만,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.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

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2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③ 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받은 안건(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3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이다.

제24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

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) ①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
2.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지정한 문화재
3. 교량·터널·육교 등 교통시설물
4.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1.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제4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제27조(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등) 시장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예술성을 고려한 미적 경관요소로써 공사장 가림막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·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공공건축물(제20조 관련)

분 류	대 상 건 축 물	비 고
공공건축물	<p>가.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동 주민센터)</p> <p>나. 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주택 등 포함)</p> <p>다. 시·구에서 건축하는 (허가)협의 대상 건축물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)</p> <p>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허가)협의 대상 건축물(파출소, 소방서, 우체국 등)</p> <p>마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 등)</p> <p>바. 공공 화장시설(화장장, 납골당 등)</p> <p>사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</p>	

[별표 2]

도시시설물(제20조 관련)

1. 도시구조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
도로시설물	가. 교량(철교를 포함한다) 나. 고가차도(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) 다. 입체교각, 지하도의 지상부, 광장 라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보도	
도로부속 시설물	가. 보도육교 나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방음벽, 중앙분리대, 횡스, 블라드 등	

2. 가로시설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고
도로부속 시설물	가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20주 이상의 가로등(배전함 포함) 및 각종 전주 나. 도로명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
문화관광시설	가. 관광안내소, 관광안내도, 안내표지판	
환경관리시설	가. 공중화장실, 휴지통 나. 대기오염 전광판	
교통관련시설	가. 보행자안내표지 나. 택시·버스 승차대 다. 정류소·택시 표지판 라. 자전거 보관대 마.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. 공용주차장 관리소 사.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	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시철도시설	가. 지하철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) 나. 지하철안내표지판 다. 환기구(흡·배기구) 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	
도로점용 대상 시설물	가. 분전함·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-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변압탑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우체통, 소화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. 사설안내표지·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. 가로판매대·구두수선대·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(노점, 자동판매기, 상품진열대) 라. 현수막 게시대, 지정벽보판(광고판), 전광판, 고정형 행정광고물, 게시판, 포스터, 통합사인, 배너기, 생활정보 지함 혹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각매체의 디자인 (일시적인 것은 제외) 마.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, 점포, 창고, 자동차주차장, 광장, 공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